

#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활성화지원사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부산울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1. 지원개요

- (사업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부산울산)
- (지원규모) 총 약 1.2억원(울산 0.6억, 부산 0.6억)
  - (울산) 지원금 : 최대 30백만원이내/3개사,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 (부산) 지원금 : 최대 20백만원이내/3개사,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 (지원기간) 2026. 4. ~ 2026. 11. (8개월)
- (사업목적)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위치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대상)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위치하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제출 必)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3. 세부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시제품제작	-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6개사 (부산3, 울산3)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이내
시험·인증획득	- 시험·인증획득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중 기업별 1~2개 프로그램 선택하여 지원 가능

\*\* 기업부담금은 10%이상 필수,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이 원칙임

###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 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필수)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 검토
  - (현장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및 상태,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발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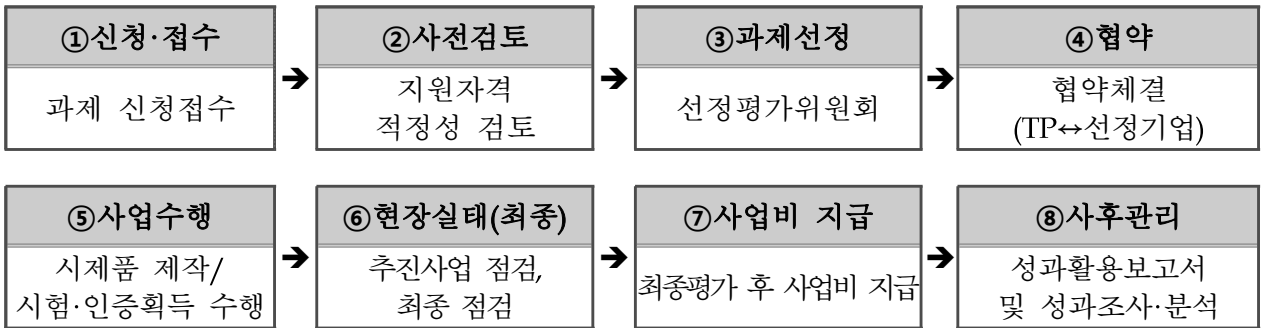
구 분	위원구성	평가항목
서류평가	-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평가위원 5인이상 평가	- 지원필요성(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등) - 기업역량(기업의 기술경영능력 등) - 목표달성(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 - 사업화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 가능성 등) - 파급효과(매출, 수출, 고용 등)

#### ○ (선정기준) 평가단계별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포함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 5. 추진일정

### ○ 선정평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04. 01.(수요일) ~ 04. 17.(금요일)
- (접수기간) 2026. 04. 01.(수요일) ~ 04. 17.(금요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울산TP :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가능  
부산TP :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가능
- (신청·접수처)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PDF) 양식으로 담당자에게 송부

##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4.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2
	5.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붙임3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4
	7.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해당시	8. 기타(인증서, 특허 등) 연구역량 증빙 서류	

##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중단할 수 있음
- 기업책임자 및 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일정 등 진행일정이 안내되므로, 신청서 및 계획서상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안내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붙임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수혜기업의 선지출 후 사업완료 후 정산으로 진행됨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수 있음
- (선정제외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취소, 제재 및 환수 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10.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내용의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 05.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울산테크노파크(ye9688@utp.or.kr), 부산테크노파크(flyjinuk@btp.or.kr)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 ○ 이의신청 방법(별도의 사업 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기한 기재
- (제출서류) 서류 기재
- (작성방법) 방법 기재

- (유의사항) 유의사항 기재

## 11.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12. 접수처 및 문의처

구분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	김예은 연구원	052-219-0985	ye9688@utp.or.kr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한진욱 선임연구원	051-974-9375	flyjinuk@btp.or.kr

끝.